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3월 19일, 윤준병의원 등 18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4. 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1. 25.) 상정, 제안

설명, 축조심사, 의결(폐기)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12. 1.) 상정, 소위심

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1) 기금 간 목적 연계성

기금은 일반적으로 특정사업이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나친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13조¹⁾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간의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²⁾,

빈집문제는 현재 농어촌이 겪는 대표적 사회문제 중 하나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빈집정비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적간 연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특히 현행법 제18조의2제6항제3호³⁾는 따른 농어촌상생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보임.

2) 농어촌 빈집정비기금 재원확보 필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농어촌 빈집 정비기금은 재원 조성 위한 별도의 부담금이나 수입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바⁴⁾, 재원확보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간·공공의 자발적 출연 등으로 매년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아, 농어촌빈집정비기금의 재정적 기반을 보완하고 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타 기금 및 재원 사례】

기 금	주요 재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 법정부담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광고 사업 수입금,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한강수계기금	물이용부담금

3) 농어촌상생기금 재원 부족 등 고려 필요

다만, 현재 농어촌상생기금은 매년 조성목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3%정도만이 조성되고 있어, 농어촌상생기금 사업을 통한 농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다년	계
목표액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7,000
조성액	309.6	231.6	226.0	375.9	455.3	354.2	304.9	346.5	38.5	2,642.5
비율	30.9%	23.1%	22.6%	37.6%	45.5%	35.4%	30.5%	34.6	-	33.0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5.4.11. 제출)

또한, 현재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액의 대부분이 지정기금 형태로 조성되어 자율추진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 출연기업이 지정한 용도 및 사업에 한정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 빈집정비와 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기금이 정기적으로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사업 유형】

구분	본부기획사업	자율추진사업	공모사업
내용	출연기업이 출연한 지정기금 및 비지정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본부가 사회공헌, 상생협력 및 ESG 사업 등 농어촌농어민 지원을 위해 기획 운영하는 사업	<u>출연기업이 용도 및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한</u> 지정기금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	민간(농어업인단체,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농어촌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출연기업이 이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사업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지원사업 유형별 사업규모】

(단위 :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조성액	309.6	231.6	226.0	375.9	455.3	354.2	304.9	346.5	2,604*
지출액	본부기획사업	-	3.0	40.5	64.0	82.2	130.1	141.0	635.3
	자율추진사업	15.4	300.9	138.9	211.2	207.3	183.1	234.0	1,541.4
	공모사업	-	-	-	-	-	-	15.0	15.0
	계	15.4	303.9	179.4	275.2	289.5	313.2	375	2,191.7

* 다년협약 금액(38.5억원) 제외

※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4.12.6. 제출)

4)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전출금이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의미하고, 농어촌상생기금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민간 성격의 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 무상제공 함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금 출연 주체인 민간 기업 또는 단체는 해당 기금이 원래의 취지인
도농 간 상생협력 사업에 쓰일 것이라는 기대 하에 기여하였을 가능성
이 있고, 이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출연 동기를 저하시키거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어촌빈집정비기금의 전입 재원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활
용하고자 할 경우, 그 정당성과 기금 본래 목적과의 연관성에 대한 충
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폐기